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기본법」 적용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507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	---

2. 주요 검토 사항	4
-------------------	---

※ 참고 자료

1. 연도별·지역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2020~2024)	9
---	---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8. 29.
- (3) 회 부 일 : 2025. 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은 삭제하되, 이에 관하여서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이행강제금) ① (생략)	제43조(이행강제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④ 시장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삭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반복
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제31조에 따른 이
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
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2. 주요 검토 사항

- 「행정기본법」은 종전까지 행정법 분야에서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없어 공무원과 국민이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개별 법률마다 유사 제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동법 제5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행정기본법」 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상 강제) ①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금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

② 행정상 강제 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일반법적 또는 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행정기본법」(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과 중복되는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하되, 이에 관하여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일반국민의 법률 규정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 측면에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행정기본법」 제31조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사유, 시기를 문서로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 제43조제3항에서는 이에 더하여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에 대해서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현행법 체제가 더 나은 측면도 있음.

< 이행강제금 통지 문서가 포함해야 할 내용 비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제43조(이행강제금)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u>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u>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u> 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 외,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가중 및 감경 규정도 적용받게 되는데,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¹⁾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현행법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음.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로, 「농지법」²⁾, 「건축법」³⁾에서도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지 문서의 내용, 가중·감경 규정 등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 관한 「행정기본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음.

< 이행강제금 통지 문서가 포함해야 할 내용, 가중·감경 규정 입법례 >

「농지법」	「건축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u>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u>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가중·감경 규정 없음.	제80조(이행강제금)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u>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u>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u>하여야 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법과 「행정기본법」 간 규정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장사법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적정하다는 입장임.

2)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	연도별 · 지역별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2020~2024)
-------------	---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47	77	73	73	73
서 울	0	0	0	0	0
부 산	0	0	0	0	0
대 구	0	0	0	0	0
인 천	0	0	0	0	0
광 주	0	0	0	0	0
대 전	0	0	0	0	0
울 산	0	0	0	0	0
세 종	0	0	0	1	0
경 기	18	35	36	43	37
강 원	2	1	3	5	9
충 북	8	8	1	4	5
충 남	5	6	8	4	1
전 북	1	2	2	1	0
전 남	6	12	10	10	9
경 북	6	9	6	4	5
경 남	1	4	7	1	7
제 주	0	0	0	0	0

* 자료: 보건복지부